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임직원 등의 비밀누설 및 도용 벌금형 상향〉

■ 김상욱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9437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상욱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03. 28.
3. 회 부 일 : 2025. 03.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벌칙에서 벌금형의 수준이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다른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유사조항의 벌금형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고, 국회사무처의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에서 제시하는 벌금형의 일반적 기준인 징역형 1년당 1천만원에 맞지 않는 등 벌금액의 적정 수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직원 등의 직무상 비밀 누설 및 도용 금지에 따른 벌칙에서 벌금형의 수준을 징역형 1년당 1천만원에 맞추어 2천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임직원 등의 직무상 비밀 누설 및 도용 금지 위반 시 벌금형을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20조(벌칙) 제11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u>500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0조(벌칙) ----- ----- ----- <u>2천만원</u> -----.

현행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11조¹⁾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20조에서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 관련 업무, 교통안전 교육, 교통사고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개인정보 및 기관의 주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

1)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11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공단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안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의 벌금액 상한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정비하여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벌금 상한액의 비례성이 유지되도록 하려는 것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두 선택형을 범죄행위에 대한 동등한 처벌 수단으로 본다면 벌금형의 상한을 징역형의 기간에 상응하게 규정하는 것이 법적용의 공정성 측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징역형과 벌금형 간 불균형을 정비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이와 관련하여 국회사무처의 「법률안의 표준화 기준」²⁾에 따르면 벌금형의 일반적 기준을 징역형 1년당 1천만원으로 제시하고 있음.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2009년 제공한 ‘벌금형 분석자료 1,2’에서는 업무상 비밀준수의무위반을 징역 ‘징역 2년 이하 내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내지 3천만원 이하’를 제시하고 있음.³⁾

2) 제45조(법정형) ① 법정형은 범죄의 죄질, 보호법익 등을 고려하여 「형법」 제41조에 따른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의 형을 규정할 수 있다.

② 법정형의 종류 및 범위는 위반행위의 가벌성의 정도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으로 정하여야 하며, 해당 법률이나 다른 법률에서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의 정도를 고려하여 균형을 맞추도록 한다.

③ 벌금형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그 벌금액의 적정수준을 정한다.

1. 일반적으로 벌금액의 최고액만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규정한다.

2. 벌금형을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과 선택형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징역형, 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기간에 상응하도록 규정하되 범죄의 종류 및 죄질에 따라 가감한다.

징역	벌금
1년 이하	1천만원 이하
2년 이하	2천만원 이하
3년 이하	3천만원 이하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

3. 불법 취득한 이익의 박탈이나 국고에 미친 금전상 손실에 대한 보전의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가중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제범죄의 경우에는 범죄행위의 정도 및 태양에 따라 그 금액을 증액하거나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는 물건 가격 또는 금전채무의 금액을 기준으로 벌금액을 정할 수 있다.

3) 국민권익위원회 2009년 7월 27일 보도자료, “징역3년 상당 벌금 1십만원에서 3억원까지 천차만별 -

또한,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운전면허 관련 업무와 교통안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방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고, 최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임직원의 비밀누설 및 도용 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다른 공공기관 직원 등의 비밀누설 행위에 대한 처벌 현황을 살펴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한 사례가 다수임. 예컨대, 「국가철도공단법」 제39조4)는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33조는 징역 2년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이를 고려하면, 한국도로교통공단의 500만원 벌금은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음.

국민권익위, 편차 크고, 화폐가치 및 소득수준 반영못해 개선 추진- ”

4) 「국가철도공단법」

제36조(비밀 누설의 금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
2. 공단의 위탁을 받아 철도시설의 계획·설계·건설 또는 유지보수나 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제39조(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8조(비밀 유지의 의무)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벌칙) 제8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요 공공기관별 비밀누설 등 벌금형 수준]

기관명	2천만원 이하	1천만원 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	○	
한국도로공사	○	
국가철도공단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국토안전관리원	○	
한국가스안전공사	○	
한국국토정보공사	○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전력거래소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자료 : 경찰청

다만, 개정안은 벌금형을 기존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4배 인상하는 것으로, 이는 상당한 폭의 인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으므로 벌금액의 구체적인 수준은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및 벌금형 조정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개정안에 대해 경찰청은 타 기관의 비밀 누설·도용 등 금지규정 위반에 따른 벌금의 상한이 대부분 2천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벌금형의 상한을 5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344